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774

발의연월일: 2024. 12. 20.

발 의 자:김상훈·김선교·김소희

이준석 · 최형두 · 고동진

김형동 • 이달희 • 엄태영

강선영 • 권영진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 보존 의무를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양측 모두에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급사업자를 보호하려는 현행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서류 보존 의무를 지키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처분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러한 이유로 실제로 수급사업자가 서류 보존 의무를 위반하였음 에도 현행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는 없음.

이에 서류 보존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수급사업 자를 제외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안 제25 조의3).

법률 제 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3제1항제2호 중 "아니한 자"를 "아니한 원사업자"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의3(과징금) ① 공정거래위	제25조의3(과징금) ①		
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발주자・원사업			
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			
을 한 하도급대금이나 발주자.			
원사업자로부터 제조등의 위탁			
을 받은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3조제12항을 위반하여 서	2		
류를 보존하지 <u>아니한 자</u> 또	<u>아니한</u>		
는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를	<u>원사업자</u>		
거짓으로 작성・발급한 원사			
업자나 수급사업자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